

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노 연 상*

대전대학교

중국은 어민으로 위장한 75만명의 해상민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이어도와 격렬비열도 및 서해 5도가 위치한 북방한계선 NLL 해역에서 마구잡이 불법 침략조업을 주도하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적절하고 마땅한 조치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논문은 주로 해양경찰청 경찰백서와 우리나라 단속법규 및 단속방법, 해양경찰의 열악한 환경 등에 기초한 자료에 따라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그쳐, 중국 불법침략조업의 근본인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수법을 분석하는데 미흡하며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우리 서해에서 불법침략조업을 주도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과 운영근거,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중국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불법침략조업의 수법을 분석하여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과 역내 국가 간 안보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회색지대 해양분쟁의 무대인 우리나라의 서해에서 중국의 해상전략과 실행수단인 해상민병대의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 해상민병대의 다양한 불법침략조업 전술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서해에 대한 해상전략을 이해하여 우리바다인 서해와 이어도 및 격렬비열도와 서해 5도가 위치한 NNL 해역을 수호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중국 해상민병대, 해양분쟁, 서해 및 부속도서, 불법침략조업

* 주저자: 노연상/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강사/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Tel: 042-280-2080 /E-mail: rys7701@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의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확보를 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상전략을 수행하면서 비무장 민간어선과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우리 어민과 해양경찰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서해를 중심으로 이어도와 격렬비열도, 서해 5도 NLL 인근 지역에서 불법침략조업으로 우리바다의 어족자원을 약탈하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남중국해부터 우리의 서해에 부상하기 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한 국가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 해상민병대를 동원하여 때로 몰려다니는 함대 조업과 불법침략조업을 주도하며 우리 서해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삼고 있는 문제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인지한 시점은 이미 중국이 상당 부분 남중국해부터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뒤였다. 따라서, 중국은 해상민병대 어선을 이용한 크고 작은 충돌이 존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갈등이 국제사회의 문제로 심각성을 깨닫기 전에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를 실효지배하고 서해를 중심으로 이어도와 격렬비열도 및 서해 5도가 위치한 북방한계선 NLL 지역까지 넘보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중국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수법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접근 틀은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관여와 인민해방군의 개입, 민간 어민들의 협조와 더불어 우리정

부의 중국 눈치보기와 소극적인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우리 서해에서 불법침략조업을 주도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과 운영 근거,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중국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불법침략조업의 수법을 분석하여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국내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국내 대학 해양경찰학 관련 학자와 어업단속 실무진들에 의하여 주로 진행되어 왔다(도기범·한재진·최정호, 2018; 김임향·김태운, 2017; 김종선·임채현, 2017; 정봉규, 2017, 2016; 고명석, 2017; 2016; 이기수·최진혁, 2016; 김홍희, 2015; 노호래, 2015; 김부찬, 2014; 임채현, 2014, 2013; 신상철, 2013; 방호삼, 2013). 그러나 국내연구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논문은 주로 해양경찰청 경찰백서와 우리나라 단속법규 및 단속방법, 해양경찰의 열악한 환경 등에 기초한 자료에 따라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그쳐(장철영, 2013; 노호래, 2012; 조동호, 2012; 최정호·정봉규, 2012; 김종선, 2012; 이종근, 2010) 중국 불법침략조업의 근본적 대상인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해상민병대를 이용한 불법침략조업의 수법을 분석하는데 미흡하며 중국 해상민병대를 이용한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 전략: 중국 해상민병대 사례연구도 있었다(김예슬, 2020, 1-138). 이 연구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상에서 보여준 회색지대 전략¹⁾의 실행사례들을 조명하면서 해

1) 회색지대 전략은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여러 권력 요소를 활용하여 정치 안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

상 민병대의 구조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국 해상민병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과 중국 문헌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으며 미국과 일본의 자료와 연구결과물을 참고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중국 해상민병대를 이용한 불법침략조업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연구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과 수단들을 분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불법침략조업 보다는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라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의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회색지대 해양전략에 대한 연구는 일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Martinson, 2018, 1-98; Green et al, 2018, 11; Morton, 2016, 909-940). 그 중에서 미국의 연구들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어선으로 이루어진 함대들을 조직하여 해상전력의 필요요건으로 간주하고 분쟁해역이나 불법조업 지역에서 어민들을 이용하여 해상 이익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Zhang 2016, 65-73), 중국 해상민병대는 민간경제에 종사하는 무장단체로서 중국정부로부터 지원과 훈련 및 장비를 제공받는 군사조직과 협업하는 형태로 어민을 가장한 제3의 해군으로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와 한국의 서해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Kennedy and Erickson, 2017, 1-22).

중국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과 관련된 해양 전략 결정 배치를 성실히 관찰하기 위하여, 현재와 향후 한 시기에 해상 민병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강력한 해양건설의 규범화, 해상 민병대의 사용 상시화, 해상전력의 우위 극대화를 실현하며 동중국해의 관문인 저장성은 해상 민병대 건설과 운용 시범 사업의 실천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해상 민병대 건설을 전면적으로 규범화를 강조하였으며(徐海峰, 2014, 65-66) 해상 안보 상황에 맞게 해상 민병 조직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何志祥, 2015, 48)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하여 현재 중국의 해안 안보 상황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하여 해상 민병대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중국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요한 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唐立達·汪治强, 2016, 42-43). 중국 해상민병대는 외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의 섬과 암초의 주권선포, 해상 경찰과 순찰, 해양 환경보호, 어업 생산독려 등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해상민병대를 육성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何志祥, 2013, 36-37).

II.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특징과 수법

1.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과 현황

1)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

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을 보면 허즈샹(何志祥)은 중국 해상민병대란, 해양 개발 생산과 해상 인권 수

미한다. 일반적인 충돌보다는 심하지만 대규모 군사분쟁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며 국제관습이나 규범 또는 법률에 도전하는 위법행위가 동반된다. 다시 말해 중국이 우리 서해와 남해에서의 회색지대 전략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부대나 중국인민 무장경찰부대가 아닌 해상 민병대를 활용하여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해역을 잠식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우리 해역을 평화도 전쟁도 아닌 중간단계의 혼란한 상태로 만들고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여 우리 해역을 점거하여 중국의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다.

호 선봉, 해상 작전 지원 부대로서 중국 바다의 생산 건설과 인권 유지 작전을 수행하는 대체 불가결한 중요한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何志祥, 2015, 48). 쉬하이펑(徐海峰)은 중국 해상민병대란, 중국의 해양 주권과 권익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기의 군사 투쟁 준비 업무를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해양작전 보장, 주권 수호 협력, 응급 구호 참가, 해양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량을 지원하고 대체 불가능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徐海峰, 2014, 65). 탕리따(唐立达)·왕치창(汪治强)은 중국 해상민병대란, 현재와 앞으로 한 시대 중국의 안보 위협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사 투쟁의 초점도 바다에서 찾아야 하며 해상 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중국의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唐立达·汪治强, 2016, 42). 다음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시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을 보면, 이서항은 중국 해상민병대란, 중국인민해방군과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쟁지역에 1970년대 중반부터 군사화된 조직을 갖춘 해상민병이라고 불리는 어민들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서해에서의 불법 침략조업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해군 소속 과학조사선의 항로 방해, 석유탐사를 둘러싼 베트남과의 해상대치, 스카보로우 암석 주변에서의 필리핀에 대한 무역시위를 하는 해양어민 군사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서항, 2017, 2). 최현호는 해상민병대란, 일반 어민과 상선 승조원이지만 군사훈련을 받거나 군사적인 지휘통제의 지시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어선에 승선하여 군사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중국군의 지시를 받아 해상시위 참가, 물자운반 지원, 외국어선 추방 등을 수행한다(최현호, 2017, 70). 이상현은 해상민병이란, 중국 대륙의 연안이나 도서에서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어민이나 도서 주민 등의 해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시에 소집되어 훈련이나 연습에 동

원되어 해상분쟁이나 사건, 해상사고에서 재난구조와 사고처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이상현, 2020, 104). 김예슬은 중국 해상민병대란, 평상시에는 일반 어민과 상선 승조원으로 활동하지만 동시에 군사훈련을 받거나 군사적인 지휘통제의 지시를 받는 조직으로 필요할 경우 어선 등에 승선하여 군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예슬, 2020, 64). 김진호는 해상민병대란, 중국의 퇴역군인들이나 이와 유사한 해양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조직된 한국의 예비군과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진호, 2020, 93). 이상희·장유락·이윤철은 중국 해상민병대란, 중국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군사조직체이며 공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이상희·장유락·이윤철, 2021, 330).

따라서 중국 해상민병대란, 중국 어민들로 구성된 준군사조직으로 중국 해군의 임무를 넘겨받아 해군의 지휘와 책임아래 일련의 군사 및 비군사 협력 업무에 참가하도록 훈련을 받으며 중국 근해에서 활동하는 준군사력으로 물자를 운반하고 각종 해양정보 수집과 보고 임무와 경찰과 순찰활동에 참여하면서 불법침략 조업을 하며 상대국가의 해군이나 해양경찰의 단속이나 출동 시에는 무기나 흉기로 무장하여 해상 시위를 하거나 불법적이며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비정규 해군을 의미한다.

2) 중국 해상민병대의 운영 근거

중국 해상민병대는 사회주의 중국이 건국할 무렵, 대만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으면서 연안 조업과 형편없는 해군력 열세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실정법적인 운영 근거는 헌법 55조, 국방법 제22조 및 병역법 제6장 제38-40조이다. 중국 헌법 제55조는 중국인민의 국가방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거나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 국민의 영예로운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²⁾ 중국 국방법 제22조는 민병은 중국 군사기관의 지휘 아래 전쟁 준비와 비전쟁 군사행동과 방위 작전을 수행한다고 민병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중국의 병역법 제6장의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민병’이라는 단어와 성격과 ‘민병의 임무와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먼저 민병은 무장한 군중조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력자이자 후견인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가하고 전쟁준비 근무 수행과 방위작전에 참가하며 외부세력 침략에 대한 저항과 조국을 수호하고 현역 부대를 위하여 병력을 보충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는데 협조하고 긴급구조에 참가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⁴⁾ 농촌과 어촌 및 소수민족의 마을과 기업과 사업체에 민병조직을 구성하여⁵⁾ 만 18세에서 35세까지 병역 조건에 부합하는 남자는 소재지 지방정부의 민병 조직에 참가하여야 하고⁶⁾ 필요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여성이나 만 35세 이상의 남성을 민병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⁷⁾

3) 중국 해상민병대의 현황

중국의 국방법 제22조와 병역법 제4조에서 중화

인민공화국의 무장역량은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⁸⁾ 중국 해상민병대가 정규 군사조직으로 중국 인민무력체계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는 사실상의 제3의 해상 군병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해상민병대의 조직은 기간 민병조직과 일반 민병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 민병조직은 민병조직의 핵심역량으로 현역 인민해방군에서 퇴임하거나 전역한 간부나 병사를 선발하여 군사훈련에 참가하거나 전문적인 군사기술을 갖춘 현역 미필자로 구성한다. 일반 민병조직은 군대 복무조건에 부합하며 핵심간부 민병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인민을 각 지역과 직장에 설치된 민병 조직에 편성하여 운영된다.⁹⁾ 해상민병대의 현황은 14만척의 어선과 75만명의 인원으로 추산하는 주장도 있으며(Andrew S. Erickson-Conor M. Kennedy, 2016, 2) 1,400만명의 어민과 20만 척의 어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중국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지만 대규모 해상민병 병력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2) 中國 憲法 第五十五條 保衛祖國、抵抗侵略是中華人民共和國每一個公民的神聖職責。依照法律服兵役和參加民兵組織是中華人民共和國公民的光榮義務。
 - 3) 中國 國防法 第二十二條 民兵在軍事機關的指揮下，擔負戰備勤務、執行非戰爭軍事行動任務和防衛作戰任務。
 - 4) 中國 兵役法 第三十八條 民兵是不脫產的群眾武裝組織，是中國人民解放軍的助手和後備力量。民兵的任務是：（一）參加社會主義現代化建設；（二）執行戰備勤務，參加防衛作戰，抵抗侵略，保衛祖國（三）為現役部隊補充兵員；（四）協助維護社會秩序，參加搶險救災。
 - 5) 中國 兵役法 第三十九條 鄉、民族鄉、鎮、街道和企業事業單位建立民兵組織。
 - 6) 中國 兵役法 第三十九條 凡十八周歲至三十五周歲符合服兵役條件的男性公民，經所在地人民政府兵役機關確定編入民兵組織的，應當參加民兵組織。
 - 7) 中國 兵役法 第三十九條 根據需要，可以吸收十八周歲以上的女性公民、三十五周歲以上的男性公民參加民兵組織。
 - 8) 中國 國防法 第二十二條 中華人民共和國的武裝力量，由中國人民解放軍、中國人民武裝警察部隊、民兵組成；中國兵役法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的武裝力量，由中國人民解放軍、中國人民武裝警察部隊和民兵組成。
 - 9) 中國 兵役法 第四十條 民兵組織分為基干民兵組織和普通民兵組織。基干民兵組織是民兵組織的骨幹力量，主要由退出現役的士兵以及經過軍事訓練和選定參加軍事訓練或者具有專業技術特長的未服過現役的人員組成。基干民兵組織可以在一定區域內從若干單位抽選人員編組。普通民兵組織，由符合服兵役條件未參加基干民兵組織的公民按照地域或者單位編組。

2.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특징

중국학자는 중국 해상 민병대를 중국 민병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국인근 섬들의 주권 선포, 해상 정찰 순찰, 해양 환경 보호, 어업 생산 양식 등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해 주권, 해양 권익, 해양 방어와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힘이라고(何志祥, 2013, 36) 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해를 비롯한 전체 해역에서 불법 침략조업을 일삼는 중국 해상민병대는 우리 어민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주며 우리 바다의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불법침략조업의 새로운 변수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준(準) 해군 조직

중국 해상민병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지휘 아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을 통하여 근해조업과 원해조업 및 원양조업의 삼위일체의 구도로 재편하였다. 해상민병대 어선을 정보선으로 지정하여 정찰 감시임무를 담당하는 해상정찰대와 적극적으로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필요에 따라 주권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응급대, 해군부대 주둔지와 중요항만, 해상작전 예정지역 인근에 지원 보장 임무를 담당하는 해상지원보장대로서 중점 부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군사훈련과 명료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徐海峰, 2014, 65). 따라서 중국 해군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정규군인과 같이 월급을 지급받고 해상보험이나 연금지원 등의 적절한 대우와 우대 혜택을 받으며 민병대 대원들

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완벽한 상벌격려 체도를 실시하는 준(準) 해군 조직이다(徐海峰, 2014, 66). 특히 핵심간부 민병조직의 구성원들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병력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역군인이나 중국 해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간부나 병사 등의 제대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어 편성되었지만 중국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한다. 이러한 준(準) 해군 조직으로서의 해상민병대는 어부에게 군복을 착용시키지는 않지만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통신장비를 탑재하며 어선에 살수장치를 장착하고 수십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쇠창살과 칼, 도끼, 쇠파이프, 물대포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일반 불법조업의 어선과 달리 조직적으로 한국의 해양경찰의 단속과 추적에 저항하기 위하여 백병전 무기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2018. 9. 11).

2) 준(準) 군사정보 수집임무 수행

중국 해상민병대는 평소에는 일반 어민들처럼 위장을 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하지만 한·중 잠정조치수역¹⁰⁾이나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주변에 불법어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군 수상함정이나 해양경찰의 함정, 순찰정, 특수기동정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남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의 이동을 수시로 관찰하거나 수집하여 중국 국가어업국이나 해경국에 보고하고 있다. 자신들의 불법침략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단속이나 체포될 가능성이 커 위기나 긴급하다고 여기면 지방 전국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해역에 투입되어 우리나라 함정이나 지도선의 경비활동과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침략조업의 단속이나 중국 어선 조업 동향파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특히,

10)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해역을 의미한다.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이며 양국은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조업허가와 처벌을 할 수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282648&viewType=confirm)’에서 2021. 8. 21 검색.

서해 5도가 위치한 북방한계선 NLL 해역에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해역이라는 특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불법침략조업을 하면서 우리 해군이나 해양경찰의 동태를 살필 수 있으며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이나 추적에도 신속하게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 NLL 경계선상을 넘나들며 무리를 지어 여유롭게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KBS 뉴스, 2021. 5. 23).

3) 불법침략조업(IUU) 주도

일반적인 중국어민이 조업하는 어선은 2-3척이나, 중국 해상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단은 100척~300척으로서 우리 서해나 남해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싸늘이 불법침략조업(IUU¹¹⁾)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의 공격적인 불법침략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관련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파탄시키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어선단이 불법침략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가나 영해와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 남미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에서도 싸늘이 불법침략조업을 하고 있어 각국이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2021. 4. 22). 2020년 8월에는 남미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으며 불법침략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촉구하였다(조선비즈, 2021. 4. 23).

4) 때로 몰려다니는 함대 조업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 어선단은 수백척씩 때로

몰려다니며 싸늘이 조업을 하는데 저인망 어선으로 해저를 훑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근해의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 800척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동해 해역에서 오징어 자원량 70%를 싸늘이하여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해역에서 오징어 개체 수가 급감시켜 우리 어민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중앙일보, 2021. 6. 21). 2019년 중국은 자국의 원양어선 수가 2701척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는 중국 영해 밖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은 16,966척으로 추산하며 미신고된 불법조업 선박이 5~8배로 1만척 이상의 중국 불법어선이 때로 몰려다니면 함대조업을 하고 있다(중앙일보, 2021. 6. 21).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함대 조업은 중국정부가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어선을 통하여 해양에서의 중국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의 식량 안보를 담보하고 자신들의 해양이익을 지키겠다는 중국정부의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5)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중국 해상민병대의 어선들이 우리의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버리는 오물과 쓰레기, 인분과 오폐수는 우리 바다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역과 연평도 해변에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형망을 이용하여 물에 떠 있는 몰고기부터 수면 아래 펄 속에 있는 각종 어패류까지 싹 긁어내는 조업으로 북방한계선 NLL 해역의 황금어장은 이미 생태계가 교란되어 파괴되고 있으며 중국어선에서 버린 페트병, 플라스틱 쓰레기와 오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KBS 뉴스, 2021. 5. 23). 특히, 2016년부터

11) IUU란,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 'Unregulated(비규제)'의 약자로 불법침략조업을 뜻하는 국제 규정이 다. 불법침략조업(IUU)를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69XX83100111>)'에서 2021. 8. 21 검색.

5년간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들이 떼지어 다니거나 정박하면서 남중국해에 버리거나 쏟아낸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물, 쓰레기와 오폐수는 남중국해 수역 생태계를 회복 불능에 가깝게 재앙을 맞았다(서울신문, 2021. 8. 7). 이러한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들의 불법침략조업은 우리 바다의 어류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녹조현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6) 비무장 민간어선으로 위장하는 술책과 꼼수

중국 해상민병대는 비무장 민간어선과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술책과 꼼수로 우리 바다에 들어와 불법침략조업을 일삼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우리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단속을 하던 우리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되었다(머니 S, 2021. 2. 16). 2016년 10월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 인근에서 중국 불법어선이 단속에 나선 우리 해양경찰 45톤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였으며 2019년에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해상민병대원들이 우리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도끼를 던지며 저항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1. 4. 23). 이렇듯 중국 해상민병대는 2016년 10월 우리 해양경찰 고속단정 침몰 사건 때와 같이 비무장 민간어선으로 위장한 불법어선들이 떼로 몰려들어 함께 우리 해양경찰을 공격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해군의 군함이나 해경국의 함정이 아닌 비무장 민간어선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를 선불리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가 힘들며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해상민병대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잘못 물리력을 행사했다간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보복하거나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 민간어선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를 바다에서 강제 정선시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이마저도 칼이나 손도끼, 쇠파이프 등의 흉기로 저항하는 경우에 교전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이 없다. 우리 해양경찰이 중국 불법어선의 민간선박을 침몰시키는 결과를 피하고자 무력충돌을 주저하게 만들며 설사 이들 해상민병을 체포하더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부대 소속의 해상민병이라는 증거를 찾거나 자백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불법조업 민간어선의 압류와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수법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의 목적과 수법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서해와 남해의 해상주권에 매우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중국 정부의 관여와 인민해방군의 개입, 민간 어민들의 협조라는 삼위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협력으로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과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상분쟁 중인 ‘회색지대 전략’과 매우 유사하고 체계적이며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의 수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하며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의 수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서해의 삼전(三戰) 공작 수법

중국은 우리 서해바다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삼전(三戰)공작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삼전(三戰) 공작 수법은 여론전, 심리전 및 법률전을 의미한다(권태용·김푸름, 2019, 261-262). 이러한 중국의 삼전 공작 수법은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

작 조례(中國人民解放軍 政治工作條例) 제14조 제18항에 전시에 정치공작은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군사전략 지침과 작전원칙과 명령을 통하여 민병을 참전시켜 분쟁지역에 선동을 일으켜 여론전과 심리전, 법률전을 진행하여 적군을 와해시키며 적을 향한 심리전과 적에 내부에 들어가 책동하여 모반을 획책하는 공작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 제19항은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 주요내용으로 예비군이나 민병대의 정치 공작, 공산당 관리 무장의 원칙을 견지하고 예비군이나 민병대의 사상과 조직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¹³⁾ 민병대 조직의 정비와 군사훈련, 민병대 임무수행 중에 정치 공작과 병역 정치사업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⁴⁾. 이렇게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통한 우리 서해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하여 여론전을 통하여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지지여론을 형성하여 중국 국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며¹⁵⁾ 심리전을 통하여 우리의 어민들과 해양경찰의 불법침략 조업 단속을 저지하고 무책입식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우리정부의 단속과 추적 수

행 능력을 약화시킨다¹⁶⁾. 또한 법률전을 통하여 중국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하여¹⁷⁾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고 우리 서해의 도발을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에서 중국이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 외국선박의 사전보고의 의무화¹⁸⁾와 외국선박의 항행을 저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¹⁹⁾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중국의 이익을 취하며 자국의 국내법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구축하여 우리어민의 조업범위와 우리 해양경찰의 항행반경을 조작하고 축소하는데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여론전과 심리전, 법률전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 3진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단속과 추적에 대한 사기저하와 국내의 여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하여 우리 서해 전역을 종횡무진 휩쓸며 불법침략조업을 하면서 우리 서해를 약탈하고 있다.

2) 서해 경계확정에 유리한 입지 선점 수법

중국은 우리 서해에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12) 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条例 第十四条 (十八) 战时政治工作。加强党委对作战的统一领导，保证中共中央、中央军委的军事战略方针、作战原则和命令、指示的贯彻执行。进行作战动员和战场鼓动。健全组织，调整补充干部。发扬军事民主，开展立功创模活动。进行舆论战、心理战、法律战，开展瓦解敌军工作，开展反心战、反策反工作，开展军事司法和法律服务工作。做好参战民兵、民工政治工作和战区群众工作。

13) 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条例 第十四条 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的主要内容是：(十九)预备役部队、民兵政治工作。坚持党管武装的原则，加强预备役部队、民兵思想建设和组织建设。

14) 中国人民解放军政治工作条例 第十四条 (十九)做好民兵组织整顿、军事训练、执行任务中政治工作和兵役政治工作。

15) 중국정부는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항의에 중국 어민은 불쌍한 사람들이니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라 혹은 중국에 대한 불법조업 비난은 사실무근이다. 또는 중국어선의 서해 조업은 합법적 어로행위이다. 등으로 우리정부의 불법조업 행태의 지적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16) 중국정부는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대책요구에도 일단 형식적으로 수긍을 하면서도 불법조업 선박은 중국정부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선박들이다. 나름 열심히 단속은 하겠지만 꼼꼼하고 물샷틈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하면서 소극적인 대응과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면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17) 中國 海警法 第四十七條 有下列情形之一，經警告無效的，海警機構工作人員可以使用手持武器：(二)外國船舶進入我國管轄海域非法從事生產作業活動，拒不服從停船指令或者以其他方式拒絕接受登臨、檢查，使用其他措施不足以制止違法行為的。

18) 中國 海上交通安全法 第五十四條、第五十五條

19) 中國 海上交通安全法 第一百零七條

(EEZ)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확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고수하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 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경우 형평성 원칙²⁰⁾을 적용하도록 규정화 하였다²¹⁾. 다시말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확정의 방법과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합의가 그 방법이고 형평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중국의 비협조로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²²⁾. 따라서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복되는 해역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상민병대 어선을 통한 불법침략조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여 해양경계 확정을 중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중국은 우리 서해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에 군침을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밀어내고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해상민병대를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침략조업을 자행하여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점하려고 한다.

3) 서해의 내해화를 위한 잠식경탄(蠶食鯨吞) 수법

중국은 우리 서해바다를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잠식경탄(蠶食鯨吞²³⁾) 수법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해상민병대 선박과 민병을 동원하여 몰래 우리 서해바다로 들어와 당연

하듯이 불법침략조업을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어도와 격렬비열도에 중국 인민해방군 기지나 중국 어민 정착촌을 건설하는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중국의 해상주권을 주장하며 서해바다를 빼앗아 중국의 바다로 병탄(併呑)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잠식경탄 수법은 우리 서해의 동경 124도를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선언하고²⁴⁾ 우리 서해에서의 활동범위를 넓혀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화 하려는 ‘서해 공정’에 나서고 있다(중앙일보, 2021. 2.11). 중국이 잠식경탄 수법을 통하여 발해만과 서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북해함대의 원활한 군사작전과 활동범위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서해를 장악하려고 한다.

4) 서해를 중국화 하려는 기정사실화 암수 수법

중국은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서해에서의 이익과 권리를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밀어붙여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암수(暗數)수법을 쓰고 있다. 기정사실화란, 상대방이 보복으로 갈등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포기하기를 선택할 때에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Altman, 2017, 883-884) 기정사실화 암수 수법은 패권국가가 상대국가에 먼저 대응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하면서 상대국가의 목표달성을 희생시킴으로써 상대국가가 적절한 대처수단을 사용할 수

20)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획정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1) 유엔 해양법 협약 제74조 및 제83조.

22) 2006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은 협상을 시작했지만 22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3) 누에처럼 절끔절끔 티가 안나게 갇아 먹다가 어느 한순간에 고래처럼 몽땅 삼키다는 수법(Foot in the door technique, FITD)을 의미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수법이다.

24) 중국이 그어놓은 우리 서해의 동경 124도라는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은 국제법에는 아무런 효력과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이 2013년에 우리나라와 협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 서해에서의 어떠한 국제법적 권한이 없다.

없거나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일정한 시기가 지났을 때에 상대국가가 대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어 패권국가에 유리한 무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김예슬, 2020, 60). 따라서, 중국은 어선과 민병대 및 종합 해군력을 적절히 결합하여 영역을 잠식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김동수·정맹석·홍성표, 2017, 35-42) 민간인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를 통한 현상변경행위에 대하여 중국은 자국의 정규군이나 무장경찰부대를 투입하여 상대국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다(정구연, 2018, 93-95).

III.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대책

1. 외교 교섭력 강화와 강력한 무력단속 검토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친중 정치인이나 중국 조선족 출신의 어용학자와 중국 공산당에게 이익을 얻거나 호감을 가진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3가지 환상²⁵⁾을 통한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망설이거나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에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 어선은 우리 서해와 남해를 넘어 동해까지 침투하여 우리 바다의 혼돈을 유도하고 이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는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2016년 3월 15일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경비대 해경선은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

루엔위안위-010호에 불법조업을 중단하고 검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중국 어선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여 끝내 격침시켰으며(뉴스 원, 2021. 6. 6), 러시아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는데, 중국인들이 밤에 정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하자, 함포 사격을 가해 격침시켰다(오마이 뉴스, 2013. 7. 4). 최근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자국내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어선에 대하여 발포 및 격침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만성적인 불법 침략조업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설사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더라도 중국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양국 정상회담, 어업 협정,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해에서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과 나포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어선은 함포사격과 같은 보다 강력한 무력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의 징역형 신설 및 벌금형 병과

중국 해상민병대의 어선이 우리정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침략조업을 하다 우리 해양경찰에 단속되거나 체포된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이 적용되어 3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고²⁶⁾ 어업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25) 중국에 대한 3가지 환상은 첫째, 북핵 문제 등 남북 관계에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환상 둘째, 남북통일에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환상 셋째, 중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이다. 이러한 3가지 환상은 우리사회에 중국 포비아(phobia)가 생성되다보니 중국이 이런 점을 역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방으로 만들며 길들이려고 한다.

이나 어획물 등을 옮겨 신는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우리정부의 어업허가 및 승인의 취소로 어업활동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으며²⁷⁾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우리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할 수 있었다²⁸⁾. 따라서 중국 불법침략조업 어선에 대하여 우리의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은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형은 아예 없었는데, 이러한 처벌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중국 불법침략조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어선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그 벌금을 내고 계속 불법침략조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불법침략조업을 한다. 따라서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불법침략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으며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의 우리나라의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으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최대 3억원 이하²⁹⁾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두번 다시 불법침략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3. 해안 지킴이 제도의 적극적 활용

2005년 5월 1일 인천 연평도 어민들은 60척의 어선을 이끌고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침략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어선 7척을 직접 나포하여 우리 해양경찰에 인계한 경험이 있다(서울신문, 2021. 4. 25; 오마이 뉴스, 2013. 7. 4). 이렇게

우리 어민들은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이나 공권력이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단속을 하자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직접 출동하여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어선을 나포한 것이다.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어선에 대한 정보수집과 나포는 우리 해양경찰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우리 어민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필리핀 내 반군의 소탕을 위하여 모집한 육군 민병대를 해상민병대로 전환한 필리핀 해상민병대나 자국 어민을 해상민병대로 조직하여 활동중인 베트남 해상민병대처럼 우리 어민들을 해상민병대로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안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와 같이 해상을 경계하고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자 및 북한의 간첩단이나 무장공비의 침투를 단속하는 육군 보병사단의 해안경계부대에서 운영하는 해안지킴이 제도³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불법침략조업 차단에 노력하여야 한다(노연상, 2020, 165). 그러므로 우리 서해나 남해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해안지킴이 어민들로 하여금 우리 바다에서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불법침략조업을 감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며 해양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불법침략조업의 감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특별경비단 창설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 서해의 외딴 섬으로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안흥항 외항)에서 직선거리로 55km이며 중국 산둥반도와는 268km 떨어진 충청남도 최서단의 섬 격렬비열도는 중국이 우리

2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제16조의 2.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제17조.
 2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제17조의2.
 2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제16조의 2.
 30) 해안지역을 효율적으로 경계하기 위하여 해안가 지역의 어민이나 주민들을 지역 해안 지킴이로 선정하여 육군 해안경계부대의 작전 제한지역에 대한 경계보조 임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노연상, 2020, 165).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욕에 맞선 ‘서해의 독도’로서 가지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격렬비열도는 2014년 중국 조선족을 앞세운 중국 해양자본에 의해 20억 원에 팔려나갈 뻔했으며 한국인을 내세운 중국 자본이 섬을 사들인 뒤 어장권 등의 어업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장 매입한 섬을 중국인들이 사는 유인도로 만들어 점유권을 주장할 경우 지금의 남중국해 못지않은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서해를 중국에 모조리 빼앗길 수 있다. 특히,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직접 연결되는 해상 교통로이며 주변 해역이 놓여, 광어, 가리비, 옥돔 등 고급 어종이 풍부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침략조업으로 우리 해양경찰과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해양경찰과 어부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는데 중국 어선의 서해 영해 불법침략조업의 약 60%가 격렬비열도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동아일보, 2021. 7. 2). 따라서 정부는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소속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같이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격렬비열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여야 하며 중국 불법어선 단속 전용 공기부양정과 특수기동정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격렬비열도는 우리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중국 어선의 불법침략조업과 해상민병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거점이며 우리 서해바다를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양국 해양경찰관 간 상대국 단속합정 교차승선

불법침략조업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불법조업 자체를 부인하던 태도를 견지하는 중국 정부의 단속과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해양경찰관이 상대국 단속합정에 교차 승선하여 공동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

합정에 중국 해양경찰관이 승선하여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불법침략조업의 현장을 목격하고 현황을 파악한다면 불법침략조업을 한 중국어선의 정보는 물론 우리 해양경찰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해상민병대 선원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같은 채증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중국정부에 제공하면서 중국정부에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중 양국 지도단속선 간 공동 순찰을 실시하고, 양국 해양경찰관이 상대국 단속합정에 교차승선하여 합동 단속을 하고자 중국정부를 설득하여야 한다.

6. 불법침략조업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우리는 서해에서 활동중인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의 전락을 통해 추구하는 의도적인 수단의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는 하여야 한다. 먼저, 중국 해상민병대의 어선이 중국 해군의 도구로써 어선이 아닌 군함이라는 사실을 중국과 해상분쟁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국가들과 함께 중국이 숨기고 은폐하고자하는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제법적 확신과 의견표명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피해국가들의 단호한 자위권 행사는 물론 중국 해상민병대의 문제가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주권침해이며 해상범죄 행위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해상정책이나 중국 관련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제법과 우리나라의 법률을 상호비교하여 중국이 의도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수법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법률의 회색지대(gray zone)나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불법침략조업, 무보고 및 무규제(IUU) 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장이나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량의 어민을 군대와 연동하여 어선을 가장한 훈련된 민간어선의 선원으로 구성된 75만명의 해상민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민병대 어선과 어민들을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하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상이나 불법침략조업을 하는 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무장경찰부대의 눈과 귀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서해나 이어도 및 격렬비열도, 서해 5도 북방한계선 NLL 해역에서 마구잡이 불법침략조업을 주도하고 때로 몰려다니며 진형을 형성하여 집단 저항하는 등의 지휘선박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우리 해양경찰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행위는 서해에서 불법침략조업을 하는 중국불법어선과 2016년 10월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양경찰 고속단정 침몰사건의 배후이며 기정사실화 압수 수법을 통하여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이어도와 격렬비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한 서해공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에서의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활동은 더 증가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림수로서 서해에 대한 중국 입지를 더욱 확장될 것이므로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예방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서해바다의 수호와 우리 어민들의 생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한·중 잠정조치수역(2021.08.21.)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282648&viewType=confirm
- 고명석 (2017). 중국어선 폭력저항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7(1): 1-28.
- _____ (2016).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NLL 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3). 1-25.
- 권태영·김푸름 (2019). 중국의 3전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26(1). 261-262.
- 김동수·정맹석·홍성표 (2017). 중국의 해양전략과 연계한 중국방공식구역 운영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11(2). 35-42.
- 김부찬 (2014).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 연구, 21(2). 123-150.
- 김임향·김태운 (2017).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해경의 공용무기사용의 법적고찰. 공공정책연구, 33(2). 55-88.
- 김예슬 (2020).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중국 해상민병대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진호 (2020).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 동북아 논총, 25(2). 93.
- 김종선·임채현 (2017).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해사법 연구, 29(1). 163-199.
- 김홍희 (2015).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무기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해사법 연구, 27(1). 55-81.
- 노연상 (2020). 중국인 해상 밀입국 범죄의 현황과 대책. 치안정책연구, 34(4). 165.
- 노호래 (2015).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

- 업 문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 57-80.
- _____ (2012).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37-63.
- 다음백과: 불법조업(IUU) (2021.08.21).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99XX83100111>.
- 도기범·한재진·최정호 (2018).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2). 115-135.
- 방호삼 (2013). 중국어선의 한국해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중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논문집, 21(1). 42-46.
- 신상철 (2013).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 연구, 25(3). 215-248.
- 이기수·최진혁 (2016).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3). 169-190.
- 이상현 (2020).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논총, 52. 104.
- 이상희·장유락·이윤철 (2021).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2). 330.
- 이서항 (2017). 중국의 새 어민세력 ‘해상민병’을 경계하자. KIMS Periscope, 76. 2.
- 임채현 (2014).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 안전학회지, 20(1). 49-58.
- _____ (2013).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관한 소고.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53-55.
- 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4(3). 93-95.
- 정봉규 (2017). 우리나라 해상집행기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향상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9(6). 1695-1706.
- _____ (2016).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호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8(6). 1549-1560.
- _____ (2016).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3). 163-185.
- 조동호 (2012). 불법조업 중국어선 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65-96.
- _____ (2012). 어업지도선의 불법조업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 53-76.
- 최현호 (2017).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중국해양 이익 관철을 위한 두 조직. 국방과 기술, 465. 70-71.
- Altman, Dan. (2017). By Fait Accompli, Not Coercion: How States Wrest Territory From Their Adversar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1(4), 883-884.
- Andrew S. Erickson ·Conor M. Kennedy. (2016). China's Maritime Militia, https://www.cna.org/cna_files/pdf/china-maritime-militia.pdf, 2.
- Green, Michael et al. (2018).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1.
- Kennedy, Conor M. and Erickson, Andrew S. (2017). China's Third Sea Force, The 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 Tethered to the PLA. *China Maritime Report* 1, 1-22.

- Martinson, Ryan D. (2018). Echelon Defense: The Role of Sea Power in Chinese Maritime Dispute Strategy. *CMSI Red Books, Study 15*, 1-98.
- Morton, Katherine. (2016). China's Ambition in the South China Sea: Is a Legitimate Maritime Order Possible. *International Affairs*, 92(4), 909 - 940.
- Zhang, Hongzhou. (2016). Chinese Fishermen in Disputed Waters: Not Quite a 'People's War. *Marine Policy*, 68, 65-73.
- 唐立達·汪治強. (2016). 適應海防形勢要求加強海上民兵工作. *國防·後備力量*, 4, 42-43.
- 何志祥. (2015). 適應海防安全形勢 建強海上民兵組織. *國防·後備力量*, 1, 48-50.
- _____. (2013). 談海上民兵建設 四納入. *國防·後備力量建設*, 4, 36-37.
- 徐海峰. (2014). 適應新形勢 全面規範海上民兵建設. *國防·經驗交流*, 2, 65-66.
- 권가람 (2021. 2. 16), “답없는 중국궤 미세먼지 갈 수록 영악해지는 싸늘이 불법조업”, 머니 S.
- 김갑봉 (2013. 7. 4), “중국어선 단속 자전거로 폭 주족 잡는 꼴”, 서울신문.
- 박민철 (2021. 5. 23), “해경 실은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 황금어장 황폐화”, KBS 뉴스.
- 박현주 (2021. 4. 23), “중어선 240척 한밤 싸늘이 中당국 한국에 단속 심하게 하지 말라”, 중앙일보.
- 이귀전 (2021. 4. 26), “베트남 민병대, 中 해양법 집행 안보에 위협”, 세계일보.
- 이신혜 (2021. 4. 23), “中 어선, 아프리카 남미까지 원정 불법조업 피해 확산”, 조선비즈.
- 이철재 (2021. 2. 11), “中 또다시 서해 무단진입 이 번엔 스파이 군함 보냈다”, 중앙일보.
- 임병선 (2021. 4. 25), “연평바다에 시커먼 중국배 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바다”, 서울신문.
- 진병태 (2018. 9. 11), “中 해상민병 인हे전술로 주변국 위협 중국해군의 제3원소”, 연합뉴스.
- 장재은 (2021. 4. 22), “중국 어선단 싸늘이식 불법 조업에 세계곳곳 신음”, 연합뉴스.
- 정은혜 (2021. 6. 21), “중국이 참치 맛에 눈뜨자 남태평양 사모아 어부가 울었다”, 중앙일보.
- 정윤영 (2021. 6. 6), “중어선 아르헨티나 해역서 불법조업 3년간 6,000여건”, 뉴스 1.
- 투고일자 : 2021. 11. 24.
 심사일자 : 2021. 12. 12.
 게재확정일자 : 2021. 12. 31.

A study on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illegal invasion Fishing by Chinese maritime civilian forces active in the West Sea of Korea

YeonSang Roh

Daejeon University

China operates 750,000 maritime militia troops disguised as fisherman.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Korean maritime police with violence by leading random illegal fishing and flocking in groups in the NLL waters of the Northern Limit Line, where Socotra Rock, the violent Gyeongnyeolbi-yeoldo, and the West Sea 5 are located. However, there are few appropriate and appropriate measures by our government. So far, papers on illegal Chinese ships have only discussed problems mainly based on the police white paper of the Maritime Police Agency, Korean crackdown laws and crackdown methods, and poor environment of the maritime police. It is insufficien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militia, which is the basis of illegal violence fishing in China, and methods of illegal violence fishing using maritime militia, and failed to present effective measures for illegal violence fishing using Chinese maritime militia. In addition, among the existing studies, marine disputes and gray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and case studies of Chinese maritime militia civilian forces were the only.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operation basis, and current status of Chinese maritime militia leading illegal violence fishing operations in the West Sea.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aritime militia and methods of illegal violence fishing, effective measures for illegal violence fishing using Chinese maritime militia civilian forces were presented. The use and effect of China's maritime strategy and implementation means of maritime militia civilian forces in Korea's West Sea, a stage of maritime militia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conflicts between regional countries, were examined. Understand China's maritime militia strategy for the West Sea by analyzing the tactics and strategies of various illegal violence fishing operations using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Civil Corps. Not only can we find a countermeasure to protect

the NNL waters where the West Sea Located, Socotra Rock and Gyeongnyeolbi-yeoldo but we also think it will help fundamental solutions to illegal violence fishing by Chinese maritime militia.

Keywords: Chinese Maritime Militia, Marine dispute, West Sea and attached islands, Illegal Invasion fishing